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백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61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387 호

1973. 7. 13.

# 시보

차례

◎ 조례

제 788 호	서울특별시보전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3
제 789 호	서울특별시 재해위험지구내의 건축제한에 대한 조례	3
제 790 호	서울특별시변소개량에대한조례	5

◎ 사명 ..... 12

◎ 정정 ..... 13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387 호

시 보

1973.7.13 13-3

##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3년 7월 11일

## ⑤ 서울특별시조례 제 788호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보건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이조에는 서울특별시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를 제 3 조의 2로 하고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 조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 4 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①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  
은 지방의무기경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명을 받아 소무를  
장리 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  
다.

제 5조와 제 6조는 제 62과 제 7조로  
하고 제 5조를 나머와 같이 신설  
하다.

제 5조 보건소에 민원봉사실, 위생과,  
보건지도과, 방역과를 두며 민원봉사  
실장과 위생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으로, 보건지도과장은 지방의무기과로  
방역과장은 지방보건기과로 보한다.

별표중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의 관  
할구역란에 도봉구는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보건소의 관할구역란에 관악구를  
각각 삽입한다.

## 부 칙

이 조기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국무총리의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  
별시재해위험지구내의 건축제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 백식

1973년 7월 12일

## ⑥ 서울특별시조례 제 789호

서울특별시재해위험지구내의 건  
축제한에 관한조례

<p>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전 축면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장이 지정 고시하는 재해위험지 구(이하 「위험지구」라 칭함) 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전 축 금지 또 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 하여 전전한 도사방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수침수구역」이라 함은 홍 수때 외수로 인하여 침수될 우 려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li> <li>2. 「내수침수구역」이라 함은 홍 수때 내수로 인하여 침수될 우 려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li> </ol> <p>제 3 조 (위험지구의 지정) ① 서울특 별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구역을 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강인도교 수위가 10.5미터 로 상승되었을 때 외수 및 내수 가 침수되는 구역</li> <li>2. 호우시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 가 있는 구역</li> </ol>	<p>② 서울특별시장은 계획의 규정에 의한 위험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 는 치체없이 위험지구의 위치·구 역 및 그 면적을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자각 1회이상 공고하 여야 한다.</p> <p>제 4 조 (위험지구내의 건축제한) 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험 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물의 건축·매수·전·증·변경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험지구내의 대지의 지반면이 한강인도교 수위가 10.5미터 일때 내수 및 외수로 인한 침수면 소보다 1미터 이상 높고, 지구의 로부터 강해 대지까지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대지안의 건축물</li> <li>2. 육체적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li> <li>3. 경차장, 경류장 기타 이와 유 사한 용도의 건축물</li> <li>4. 자동차 차고 기타 이와 유사 한 용도의 건축물</li> <li>5. 공사용 현장 사무소 및 창고</li> <li>6. 홍행, 박람회용 가설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가설 건축 물로서 존치기간이 6개월 이내</li> </ol>
---	---

## 의 전축률

7. 제 2호 내지 제 4호에 계기하는 전축한의 부속 전축률

## 제 5조 (위험지구내의 전축률의 구조)

재해위험지구내의 전축률은 목조 이의의 구조로서 침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 6조 (부적합기준전축률에 대한 조치)

위험지구의 지정 당시 기존 전축률이 제 4조의 규정에 계합하지 아니하므로서 인명과 재산상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축한의 개수이 전동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 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면소개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 대 씨

1973년 7월 12일

## ⑤ 서울특별시 조례 제 739 호

## 서울특별시 면소개량에 관한 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축법 시행령 제 2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소개량을 위한 특정구역의 지정과 지정구역내의 불량면소 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한강수질의 향상을 방지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涵義는 다음과 같다.

1. 「불량면소」라 같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소를 말한다.  
가. 천리수사 고지서 오수판이 오를

진화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절

하수로에 연결된 면소

나. 저수조의 청소가 불가능한 면소  
다. 분뇨탱크가 불립수설로 되어

있지 아니한 면소

라. 소 물질화조 유출구의 물이 각

이 걸친 하수도관의 굽이·보다

나아 하수의 유출이 일어나는

면소

13-6 제 387 호

시

보 1973.7.13

2. 「공공하수도」 「처리 지역」 및 「증발처리장」이라함은 하수도법 제 2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구역 및 시설을 말한다.	3.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 의 공업용지조성 사업지구
3. 「수세식변소」라함은 세척수에 의하여 분뇨를 하수도에 방류시키는 변소를 말한다.	4. 기타 시장이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1) 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내의 모든 변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량변소, 수조식변소 또는 수세식변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현지여건으로 보아 불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변소에 대하여 는 그로 하자 아니하다.
4. 「개량변소」라함은 변소에서 나 오는 세척수와 분뇨를 오물정화조 판 거쳐서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성과한 후 하수도에 방류시키는 변소 를 말한다.	5. 「처리구역」은 수조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조식 변소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개량식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변소개량을 위한 특정구역의 지정) (1) 시장은 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지역중에서 변소개량을 위한 특정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기존변소의 개량) (1) 시장은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내의 기존변소중 물방변소의 소유 자 또는 사용자에게 하여 전조의 3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개량할 것을 명할수 있다
1. 상수도 및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완비된 지역	
2.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명령을 받은 벤소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개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개량신고서에 벤소도면을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신고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5일시내에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벤소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신고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을 받은후가 아니면 그 벤소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3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시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명령을 받은 벤소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량이 끝난때 까지 당해 벤소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 5조(건축벤소의 허가 및 준공) 벤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에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벤소도면을 첨부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받은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제 6조(생산의 위험)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현찰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구정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3-8 제 387 호

시 보

1973.7.13

## 제 1 호서식

## 불 량 변 소 개 량 신 고 서

서 울 특별시 변소개량에 관한 조례제 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면첨부 신청합니다.

1. 설치장소: 구 동 번지 호

2. 건축주: 구 동 번지 호

3. 건물의 종류: 용도: 열전명:

4. 1 일 평균 대상인원:

5. 변소의 형식, 구조:

6. 세척수의 사용계획:

7. 소독방법:

8. 방류장소:

첨부: 변소개량도면 1부

시기 197 년 월 일

신고자주소: 구 동 번지 호

성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제 367 호

시 보

1973.7.13. 13-9

## 제 2 호 사식

수 세 시 번 소  
수 조 시 번 소      준 공 신 고 서  
개 양 번 소

서울특별시 번호개방에 관한 조례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준공 신고합니다.

1. 설치 장소 :
2. 건물 주 :
3. 건물의 종류 :
4. 1일 평균 대상인원 :
5. 형식, 구조 :
6. 세척수의 사용계획 :
7. 소독의 방법 :
8. 방류의 장소 :
9. 공사 완료일자 :

시기 197 년 월 일

신고자주소 : 구 동 번지 호

성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13-10 제 387 호

1973.13.

제 3 호 서식

검 사 원 증

197 년 월 일

제 호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번소 개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번소의 공사는 검사 결과 건축법 등법 시행령 및 조례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함.

1. 허가번호:

2. 허가년월일:

3. 주요용도:

연면적:

4. 건축장소 또는 축조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5. 건축주 주소, 주민등록증 번호:

성명:

6. 검사년월일: 197 년 월 일

7. 검사원 직위 성명: 인

제 387 호

시 표

1973.7.13. 13-11

## 제 4 호 서식

수세식변소  
수조식변소 허가 신청서  
개량변소

서울특별시 백화점에 관한 조례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 도면첨부 신청합니다.

1. 설치장소: 구 동 번지 호
2. 건축주: 구 동 번지 호
3. 건물의 종류: 용도: 연면적:
4. 1일 평균 대상인원:
5. 면소의 형식, 구조:
6. 세척수의 사용계획:
7. 소독방법:
8. 방류장소:

첨부: 면소설치도면 1부

서기 1973년 월 일

설교자주소: 구 동 번지 희

성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13-12 제 387 호 . 시

보 1973.7.13.

사명		지방보건기사보(병리) 흥수길 마포병원 근무를 명함.		
(◎) 1973. 7. 1.		마포병원 지방보건기사보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		
지하철건설본부부 본부장기파장 보목기장		마포병원 지방보건기사보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		
지하철건설본부전설과장에 보함. 지하철건설본부전설과장에 보함.		마포병원 지방보건기사보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마포병원 지방간호원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		마포병원 지방보건기사보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마포병원 지방간호원 영동포병원 근무를 명함.		토목시험소 지방토목 소장 기정 보함. 지하철건설본부공무과장에 보함.		
마포병원 지방간호원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지하철건설본부부 제2조사과장 기정 토목시험소 소장에 보함. 기전과 기전사 총무과판리자장직무 대리를 명함.		
마포병원 지방간호원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 1973. 7. 12.		
마포병원 지방간호원 1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도시기획과 지방토목 지하철건설본부근무를 명함.		
마포병원 지방간호원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토목 토목시험소근무를 명함.		
마포병원 지방간호원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 1973. 7. 15.		
조연희		서대문구 주방행정 지방농림기사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조경과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

제 387 호

시 보

1973.7.13. 13-13

(정 경)

1973년 7월 5일차로 발간배부된 시보 제 384 호그 1이 제 384 호그 2의  
오식이었기 정정 합니다.

1849